

[별표 2]

행정처분 기준(제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처분기준에서 "1차"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, "2차"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령	처 분 기 준	
		1차	2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1호	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	
나. 천재·지변,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2호	공사의 중지·변경,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·변경·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	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
다.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3호	공사의 중지·변경,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·변경·이전 또는 시정명령	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
라.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4호	시정명령	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
마.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5호	시정명령	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